

광주지방법원 2023. 2. 10 선고 2021나6566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재판경과

광주지방법원 2023. 2. 10 선고 2021나65667 판결

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. 8. 17 선고 2020가단1124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울 담당변호사 강신중

피고, 피항소인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바른길 담당변호사 한상종

변론 종결2023. 1. 13.

판결 선고2023. 2. 10.

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. 8. 17. 선고 2020가단1124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완도군 D 전 1,593m²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7. 6. 27. 접수 제63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,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자기계약, 착오취소 주장에 관하여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 판단

가. 자기계약 주장 및 판단

원고는,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자신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, 이 사건 매매계약이 민법 제124조에서 규정한 자기계약 금지에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한다.

갑 제9, 10호증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, 원고와 피고가 소외 F가 운영하는 행정사사무소에서 매매계약서, 위임장 양식을 교부받아 각 해당 부분에 날인한 다음 이를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위 사무소에 제출한 사실, 위 서류는 매매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메모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E이 운영하는 법무사사무소에 전달된 사실, 이후 위 법무사사무소에서 메모에 따라 매매계약서, 위임장 양식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본인이 직접 피고와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, 달리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자신과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. 이와 다른

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착오취소 주장 및 판단

원고는, 이 사건 토지가 시가 3,000만 원 상당임에도 원고가 이를 착오하여 이에 현저히 미달한 9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, 착오를 이유로 2021. 11. 15.자 준비서면의 송달에 의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.

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7. 6. 14.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3,000만 원 상당이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(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2017년도 공시지가가 4,858,650원 정도로, 당시 위 토지의 시가는 900만 원 ~ 1,000만 원 정도였다고 주장한다), 나아가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그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(대법원 1992. 10. 23. 선고 92다29337 판결 등 참조) 이 사건에서 토지의 시가가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. 이에 관한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김효진

판사김영아

판사김성흠